

**【 2016.05.27(금) 강원도민일보 】**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도회장은 27일 오후 6시 30분 원주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단장 이상록)에

서 열리는 군 시설공사 발전방안 간담회에 참석한다.

# ‘입찰참가제한’ 남발, 중복·과잉제재 덮에 빠지다

공정위, 하도급업체에 보복·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추진… 기업 활동 위축 우려

정부가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재 수단으로 입찰참가제한 카드를 잇따라 꺼내들고 있다.

입찰참가제한은 불법행위에 따른 처벌에 더해지는 중복·과잉 제재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만큼 기업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3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불공정거래를 신고한 하도급업체에 보복할 경우 바로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골자로 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대금을 때이는 등 불공정행위를 당해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원사업자의 보복행위가 단 한 차례라도 적발되면 공정위가 즉시 관계기관에

입찰참가제한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입찰참가제한 요청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벌점의 부과기준을 손질했다.

현재 시정조치 유형별 벌점 기준을 보면 경고는 0.25~0.5점, 시정권고 1.0점, 시정명령 1.0~2.0점, 과징금 2.5점, 고발 3.0점 등이다.

현행 하도급법상 누적 점수가 5점을 초과하면 입찰참가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데, 공정위는 보복행위로 검찰에 고발되는 경우 5.1점의 벌점을 부여하도록 해 단 한번의 보복행위에도 입찰참가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복행위로 적발된 사업자의 입찰참가제한을 요청하기 위해선 보복행위에 대한 벌점 부과기준 조정

이 필요하다”며 “중전의 벌점 부과기준으로는 입찰참가제한을 즉시 요청하기 어려운 만큼 그 기준을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도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보조금을 거짓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국가계약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계약불이행, 부실이행, 안전사고, 담합, 뇌물, 위조, 사기, 조세포탈 등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입찰참가제한은 법률 개정사항”이라며 “상반기 중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입법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 단 한건 적발되도 공공시장 퇴출… 기업엔 ‘사형선고’

하도급업체에 보복행위 처벌… 판단기준 모호  
국고보조금 누수 차단 장치 많은데 제재 과도

정부가 입찰참가제한 장치를 강화하고 나선 것은 공공조달시장 퇴출이라는 강력한 수단을 통해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입찰참가제한은 공공조달시장에서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 없는 만큼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한 원사업자의 보복행위를 막고 ‘눈먼 돈’으로 불리는 국고보조금의 누수를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입찰참가제한이 불법행위에 따른 제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어 중복·과잉 제재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신고한 수급사업자에게 보복행위를 단 한 차례만 하더라도 곧바로 관계기관에 입찰참가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와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입찰참가제

한도 그 연장선에 있다.

수급사업자의 신고·제보에 따라 불공정 거래가 적발된 원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일부 원사업자들이 불공정 거래를 신고·제보한 수급사업자에게 보복행위를 하고 있는 만큼, 보복행위에 대한 사전예방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지만 보복행위 판단기준을 둘러싸고 잡음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공정위가 말하는 보복행위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위의 조사에 협력한 수급사업자에게 거래단절, 거래물량 축소 등의 불이익을 제공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를 의미한다.

하지만 거래단절이나 거래물량 축소 등의 판단에 있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입장과 해석이 엇갈릴 가능성이 크다.

업체의 한 관계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분쟁은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있는 탓에 첨예하게 대립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보복행위에 대해 선불리 제재를 가하기 전에 보복행위에 대한 판단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입찰참가제한은 과도한 제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조금 부정수급자도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받아 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보조금 사업에서 퇴출된다.

더이상 보조금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가운데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과잉 제재라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보조금 누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와 보조사업 일몰제 강화 등 부정수급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들이 곳곳에 있다”며 “입찰참가까지 제한하게 되면 기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